

제1019호 2025. 8. 14.

건설동향

BRIEF_{ing}

• '23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국내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1.63배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2.0배
- 맞춤형 산업 안전관리와 전 생애주기 안전문화 혁신 필요

• 공공건설 사후평가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사후평가제도,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개선 위한 개정 추진
- 평가방법 구체화, 전문관리기관 사전검토 추가,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추진
- 공공건설사업의 품질·효율성 제고, 미래 사업 개선 위한 핵심 프로세스 기대

•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23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59‰, 10개국 평균(0.78‰)보다 2.0배 높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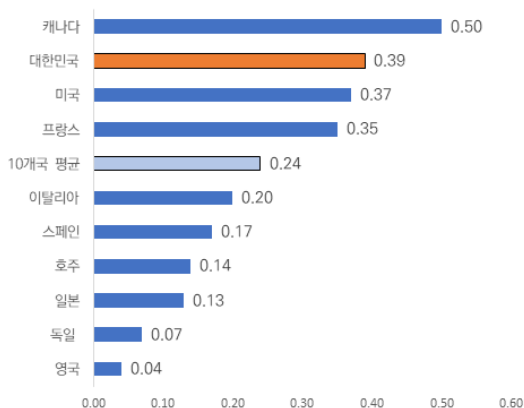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국내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1.63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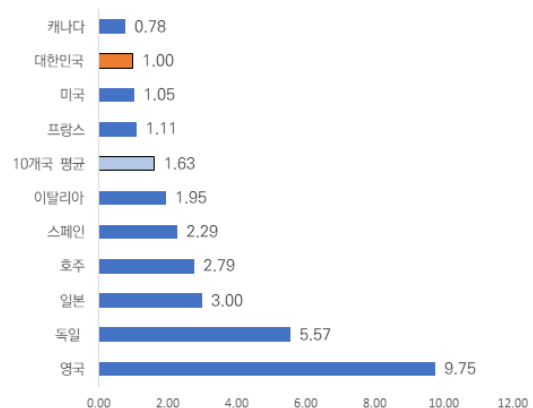
●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3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약 1.7조 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함.

- '23년 명목 GDP 상위 10개국은 미국(\$27.7조), 독일(\$4.5조), 일본(\$4.2조), 영국(\$3.4조), 프랑스(\$3.1조), 이탈리아(\$2.3조), 캐나다(\$2.2조), 멕시코(\$1.8조), 호주(\$1.7조), 대한민국(\$1.7조) 순임.
- '21년부터 멕시코가 스페인을 제치고 OECD 경제 10대국으로 진입하였으나,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하는 멕시코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14년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 19.5 → '21년 0.7). 이에 본 분석에서는 멕시코 대신 GDP 규모 11위인 스페인(\$1.6조)을 포함하여 분석함.

〈그림 1〉 '23년 국가별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2〉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격차(국내=1.00)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economic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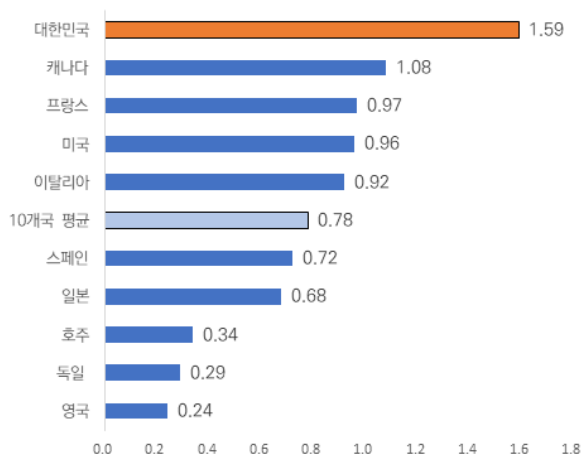
1) 10개국의 전산업 및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10개국 중 프랑스와 캐나다는 '22년, 나머지 8개국은 '2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23년 국내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캐나다(0.50‰)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10개국 평균인 0.24‰보다 약 1.62배 높은 수준임.
-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0.04‰)이며, 독일(0.07‰), 일본(0.13‰) 순임.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0.50‰)이며, 대한민국(0.39‰), 미국(0.37‰) 순임(〈그림 1〉).
- 국내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안전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9.75배, 독일의 5.57배, 일본의 3.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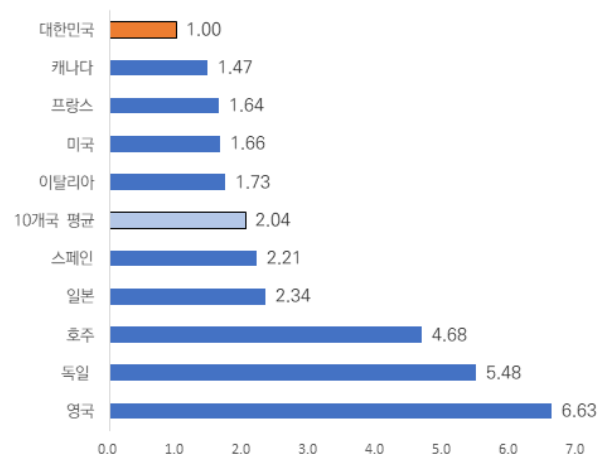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2.0배

- '23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로 OECD 경제 10대국 건설산업 중 가장 높았으며, 10개국 평균인 0.78‰보다 약 2.04배 높은 수준임.
-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0.24‰)이며, 독일(0.29‰), 호주(0.34‰) 순임. 반면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1.59‰)이며, 캐나다(1.08‰), 미국(0.97‰) 순임(〈그림 3〉).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의 6.6배, 독일의 5.5배, 호주의 4.7배에 달함(〈그림 4〉).

〈그림 3〉 '23년 국가별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그림 4〉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격차(국내=1.0)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economic activity

- 조사된 10개국 모두 건설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평균 3.25배)으로 조사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설산업은 타 산업보다 위험한 알 수 있음(〈표 1〉).
- 건설산업과 조산업 사고사망만인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6.00배)이며, 일본(5.23배), 이탈리아(4.60배) 순임. 국내 격차도 4.08배로 10개국 평균(3.25배)을 상회함.

〈표 1〉 '23년 기준 OECD 경제 10대국 제조업 및 건설업 주요 사망사고 지표 요약

구 분	명목 GDP	사고사망인율(‰)			
		제조업(A)	건설업(B)	격차(B/A)	출처
미국	27.7조 달러	0.37(8위)	0.96(8위)	2.59	U.S. Bureau of Labour
독일	4.5조 달러	0.07(2위)	0.29(2위)	4.14	국제노동기구(ILO)
일본	4.2조 달러	0.13(2위)	0.68(4위)	5.23	
영국	3.4조 달러	0.04(1위)	0.24(1위)	6.00	Health and Safety Executive
프랑스	3.1조 달러	0.35(7위)	0.97(8위)	2.77	국제노동기구(ILO)
이탈리아	2.3조 달러	0.20(6위)	0.92(6위)	4.60	
캐나다	2.2조 달러	0.50(10위)	1.08(9위)	2.16	
호주	1.7조 달러	0.14(4위)	0.34(3위)	2.43	Safe Work Australia
대한민국	1.7조 달러	0.37(9위)	1.59(10위)	4.08	고용노동부
스페인	1.6조 달러	0.17(5위)	0.72(5위)	4.24	국제노동기구(ILO)
10개국 평균	5.2조 달러	0.24	0.78	3.25	-

- 또한, 10개국 모두 전체 산업의 안전수준이 높은 국가(영국, 독일, 호주)에서 건설산업의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즉, 국가 차원의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 문화가 건설산업 안전관리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국내 건설산업의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과 전체 산업 간의 안전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과 함께,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산업 차원) 건설산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구조의 복잡성 등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로 인해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임. 이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타 산업보다 안전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 타 산업과의 안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 (국가 차원) 일상 속 생활 습관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산업 현장을 포함한 가정, 학교를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 안전 문화 혁신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공공건설 사후평가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사후평가의 '형식적 절차'에서 '정책·사업 개선 도구'로의 전환 -

정수완(부연구위원 · swchung@cerik.re.kr)



사후평가제도,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개선 위한 개정 추진

- 공공건설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영역임. 사후평가제도는 사업 전(全)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공 이후 사업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차기 사업에 환류(還流)함으로써 건설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리 수단임.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업의 전(全)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후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함.
 -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 확인을 넘어, 사업 기획의 적정성, 설계의 완성도, 시공의 효율성,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 사업 위주로 제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평가 항목도 정교화됨.
 - 2010년대 이후에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각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평가 시점의 유연화와 중소 규모 사업(300억 이상)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편이 진행됨.
 - 그러나 현장에서는 평가 기한의 촉박함, 복잡한 자료 작성 절차, 평가 항목의 현실성 부족, 평가 결과의 제한적 활용 등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가운데 최근 행정 예고된 사후평가 기한의 완화는 제도의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사업 수행성과 평가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 △사업유형별 세분화된 평가 서식과 간소화된 자료 작성 절차, △기술제안입찰 및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효과 반영, △전문관리기관의 사전 검토 절차 신설,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석의 객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함께 향후 공공건설 사후평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평가방법 구체화, 전문관리기관 사전검토 추가,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추진

-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해 평가 완료 시점 및 분리 발주된 사업의 실시 방안을 개정함.
 - 사업수행성과 평가 완료 시점을 전체 공사 준공 후 60일 → 평가 대상별·공구별 준공 후 120일 이내로 완 화하고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사업은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함.
 - 공중·내역별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각각 준공 이후 실시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 준공 이후 실시한다고 규정함.

〈표 1〉 평가시기 및 방법에 대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 구 분하여 각각 ---.	○ 문구 명확화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1. ----- 건설공사 ----- 120일 ---	○ 사업수행성과 평가 완료시기를 명확화(사후 평가서 작성시기와 구분)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2 및 별표3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4 또는 별표5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가 공중별·내역별 로 분리 발주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별로 각각 실시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 전체가 준공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 및 제8조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 분리 발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방법을 규정

-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수행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함.
 - 기존에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수행 내용을 간소화된 서식으로 작성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수시로 작성토록 개정함.
 - 마찬가지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수행 관리 현황표 작성 서식 또한 개정하고 조사 시행 후 수시로 작성토록 작성·입력 기한을 삭제하였음.
- 기존 일괄·대안 입찰 방식 이외에 대형 입찰 방식 중 하나인 기술 제안 입찰 방식의 건설공사 추진 성과도 평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사후평가의 내용, 자료수집·관리, 사업수행성과 평가 등의 ‘일괄 및 대안 입찰’ 방식에 ‘기술 제안 입찰’ 방식 문구를 추가함.
 - 일괄·대안·기술 제안 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작성 서식에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최초 제안 사항과 이행 여부 및 적용 성과 평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서식을 개정하여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에세이 형태의 사업수행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신설하여 작성토록 함.
- 기존 평가표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유형(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공항, 택지개발, 에너지 공급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환경, 기타 등)을 세분화하여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성과에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BIM, VR/AR,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시공자동화, 건설로봇, OSC/모듈러, IoT/센서, 드론, 영상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기타 등)을 표기하도록 하였음.
 - 그 외 시공 중 민원, 안전사고(재해), 재시공에 대한 견수와 난공사, 특수공사, 설계변경 심의를 받는 경우 등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업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사업 특이성 항목에 기재토록 하였음.
 - 신설된 사업수행성과 평가 보고서의 경우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설계변경 내용, 사업의 특이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공 중 민원, 안전사고(재해), 재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자체평가를 통해 추후 사후평가 환류 계획까지 입력하여야 함.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평가 및 분석 내용을 세분화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원인 분석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함.
- 기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서식에서 사업효율 평가의 수요분석과 비용편익(B/C)분석을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평가 지표의 타당성조사시점 예측값과 사후평가시점 실제값을 비교하도록 하였음.
 - 파급효과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나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를 점수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수요 예측 대비 실제 이용 실적 증감원인, 예측 B/C 대비 실제 B/C 증감원인 및 다수민원²⁾ 발생원인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함.
-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전문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를 전문관리기관이 사전에 검토, 보완 후 평가위원회 심의로 진행, 이를 위해 사후평가서 제출 시점과 검토·통보 기한(30일 전 제출, 20일 내 검토)을 규정함.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에서 평가 지표별 인원 기준으로 조정하고, 위원별 의견서 분리 관리, 유사사업 담당자 회의 참관 허용, 전문관리기관 위원 추천 등 운영 효율성을 강화함.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한 ‘다수인 관련민원’

공공건설사업의 품질·효율성 제고, 미래 사업 개선 위한 핵심 프로세스 기대

-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평가의 품질 향상과 행정 부담 완화, 첨단기술 성과 반영 및 정책·제도 한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한 연장과 사전검토 절차 도입으로 평가서의 완성도·정밀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서식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됨.
 - 기술제안입찰과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효과 평가로 최신 건설기술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 도입 효과 분석 및 확산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유사사업 담당자 참관을 통해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 가능성 증대와 사업효율·파급효과 분석의 구체화로 예산 편성·사업계획 수립의 근거가 강화됨.
- 이는 단순한 운영규정 정비를 넘어, 사후평가제도를 정책·기술 개선을 위한 전략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행정 절차 중심의 사후평가에서 성과 분석·피드백 중심의 평가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첨단 건설기술의 적용 성과를 공식적으로 검증·기록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님.
 - 또한 발주청, 전문관리기관, 평가위원회 간 다단계 검증 구조를 구축해 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함.
- 제도 변화가 기대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사후평가 결과를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차기 사업의 기획·설계·예산 단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발주청 간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BIM, 드론, IoT, 센서 데이터 등 현장 생산 데이터를 평가 지표로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 평가를 고도화하고 기술제안입찰과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술 확산 정책과 연계토록 해야 함. 여기에는 데이터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함.
 -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그룹을 확대하고, 사후평가위원회와 발주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통해 평가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또한, 재검토 기한에 따른 주기적 평가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개선을 함.
- 사후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적발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래 사업을 더 나아지게 하는 지식 창출 과정”이므로, 이번 개정이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건설사업 전반의 품질·효율·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과 활용 모두에서 정책적 의지와 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 세미나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일 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 최 |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세미나 배경 및 목적 |

-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의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산업의 경우 대표적 규제 산업임에도 산업 활력과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혁은 오랜 기간 답보 상황으로 오히려 규제에 의존한 산업 규율의 정책 반복에 따른 중층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에 근원적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상황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 프로그램 |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개 회 사	이종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15:30	주제발표	1주제 :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 - 김화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주제 :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 · 안전 · 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 - 박상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3주제 :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 · 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5:40	Coffee Break	
15:40~17:00	종합 토론	
15:40~16:50	· 좌 장 :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6인) -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혁신부원장 - 권오경 건설산업비전포럼 사무총장 -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장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16:5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